

#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 흠 제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성흠제 의원입니다.

지난 8월 2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현행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의 일환인 공동(空洞)조사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서울시와의 중복조사 및 이로 인한 불필요한 조사비용 낭비 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

본 개정안은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내용으로 공동조사의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

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자문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